

건강관리카드 제도 안내



(주)온누리이엔지

목차

- ▶ 건강관리 카드 제도란
- ▶ 건강관리 카드발급 조건 안내
- ▶ 건강관리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안내
- ▶ 건강관리 카드 발급 방법 안내
- ▶ 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실시 방법 안내
- ▶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요청 방법 안내



건강관리카드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카드입니다.

카드 소지 시 연 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건강관리카드 발급 조건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등이며, 물질별 세부 교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조건 안내

연번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	대상 요건
1	베타-나프탈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2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 또는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 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 10 + (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

건강관리카드 발급 조건 안내

연번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	대상 요건
6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갱내 또는 옥내에서 하는 분진발생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25] 나.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集塵), 재처리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 다만, 너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8	가. 염화비닐을 중합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현탁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나.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크롬산·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삼산화비스소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焙燒) 또는 정제를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업종만 해당)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14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 (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15	비파괴검사(X-선)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이었던 사람

건강관리카드 발급 후 혜택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비용 부담의 걱정없이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전자문서 포함)

안전보건공단 전국 30개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업무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필요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 사진(2.5cmx3cm) 1장
- 카드 발급대상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대상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

건강관리카드 [] 발급 [] 재발급 []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요일
신청인	성명	성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또는 기재내용 변경사유	주소	전화번호	대상 품목	

직업 경력간담면담수첩 발급 대상 업무만 기재)

근무기간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종사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 제18조에 따라 건강관리카드의 [] 발급 [] 기재 내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업무주 재)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사진(2.5cmx3cm) 1장

제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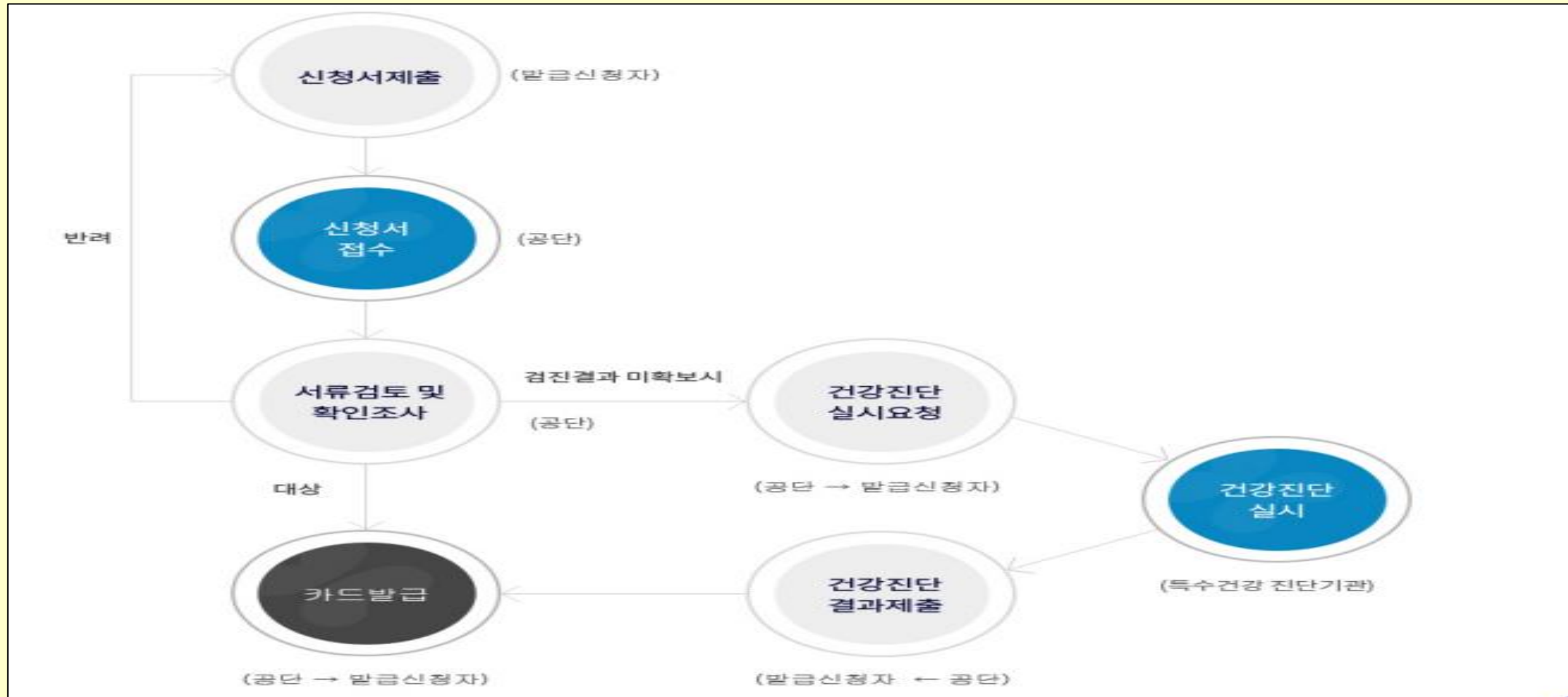
이 장 → 접수 → 확인·검토 → 결재 → 신청 → 발급

신청인() 접수() 확인·검토() 결재() 신청()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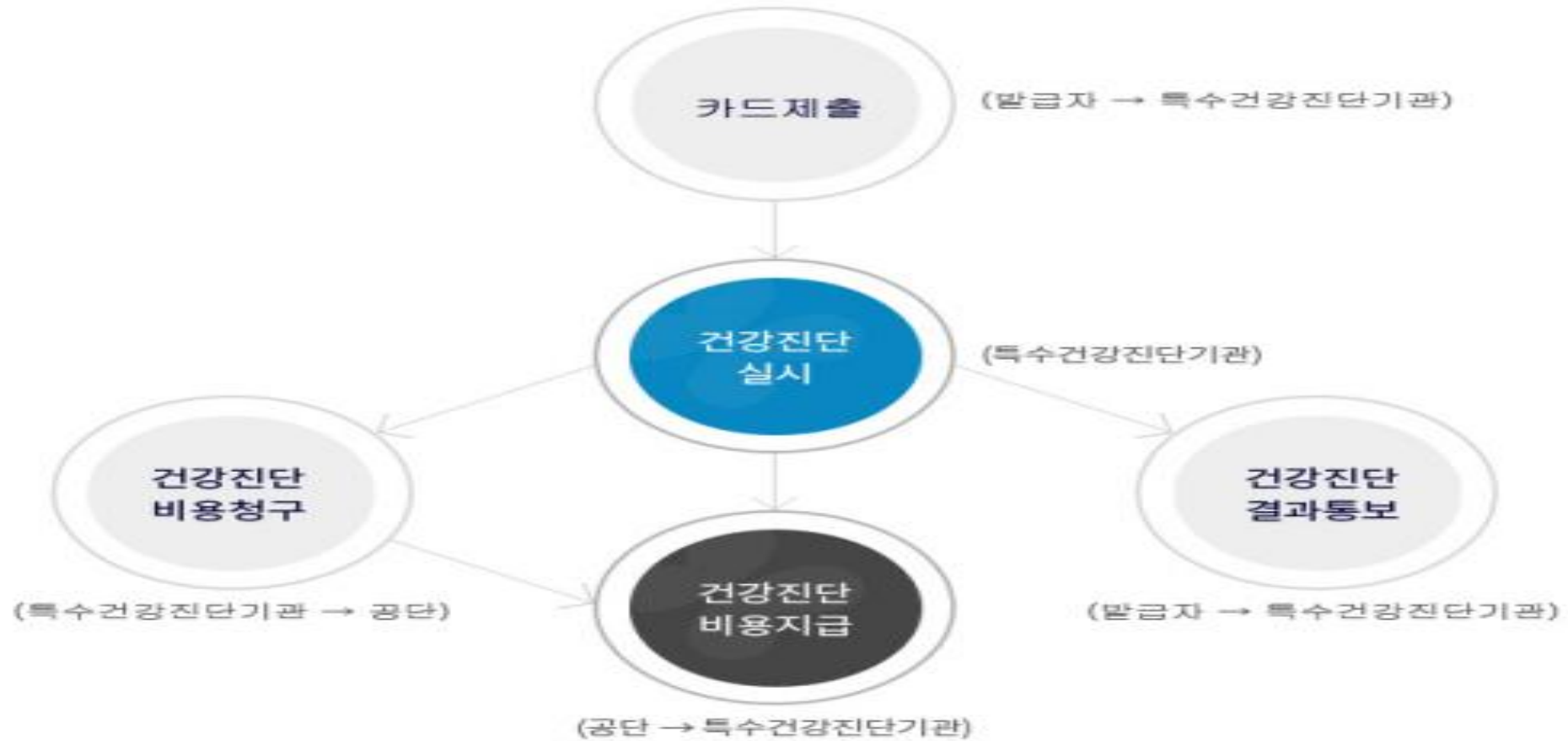
신청인() 접수() 확인·검토() 결재() 신청() 발급()

2025년 12월 31일 현재 유효 기한: 5년 (기타 별도)

건강관리카드 발급 방법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실시방법



카드소지자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요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메뉴에서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별지 제5호서식]
카드(수첩)소지자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카드(수첩)발급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현 거주지 주소		
건강진단 실시 확인	입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은행통장사본 첨부	
	건강진단실시기관	건강진단실시일자	
건강진단 실시 확인	기관 확인자	소속 성명	(직업 또는 서명)

*사항으로 확인 시 기공 확인자를 반드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에 따라 카드소지자 건강진단에 소요된 자비부담 교통비 및 식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리 공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건강관리카드(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에 소요된 교통비 및 식비 지급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카드(수첩)발급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현 거주지 주소, 입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 즉시
 ○ 신청일 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 보관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즉시 파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할 경우를 증명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건강관리 카드(수첩) 건강진단 실시 교통비 및 식비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지사항 및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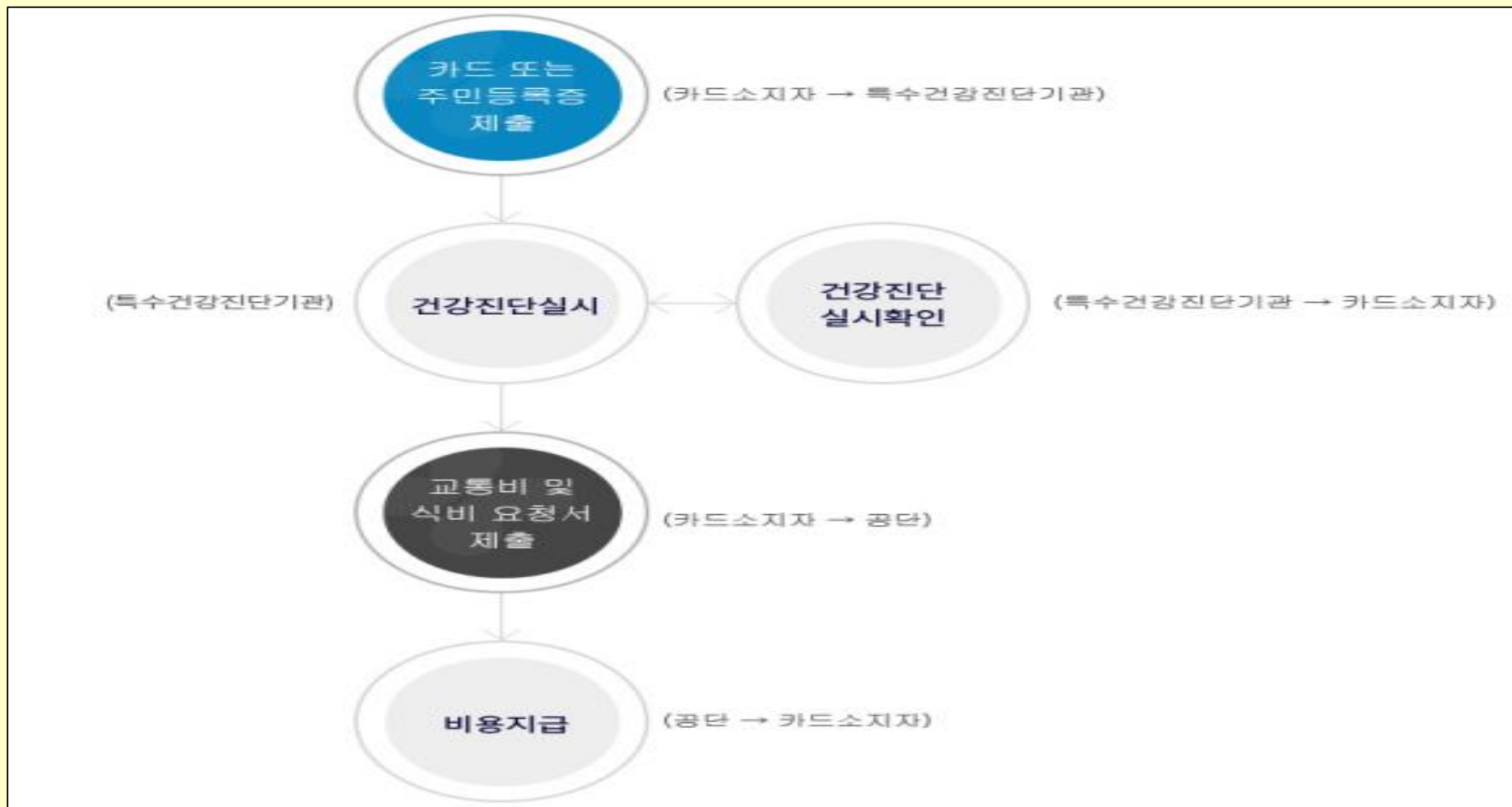
○ 카드(수첩)소지자 건강진단을 목적으로한 카드(수첩)소지자가 건강진단기관 이월에 소요된 자비 부담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급금액은 공단에서 정한 상액(월 20,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본인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여 부족이하게 현금 지급을 희망하는 문헌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직접 방문하여서 수월확인이 바랍니다.
 ○ 위하는 신청서(은행통장사본 첨부)를 작성하여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오시전송(택배)으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합니다.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팩스번호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건강진단 실시확인 → 입금 → 입금결과 문자통보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카드소지자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요청 방법



안전보건공단 지역별 문의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공단 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건강센터 총괄팀	052-703-0645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7~9층 (봉래동1가, 우리빌딩)	02-6711-2826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부곡동)	051-520-0616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8, 9, 11층 (우산동, 광주무역회관빌딩)	062-949-8758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구산동)	032-5100-565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20~21층 (덕산동, 삼성생명빌딩)	053-609-0540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문지동)	042-620-5635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2층, 4층 (삼산동)	052-226-0525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7, 10층, 13층 (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7160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2층 (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033-815-1059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3층 (가경동, KT)	043-230-7126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3층 (불당동,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041-570-3425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4층 (인후동,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8533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7층 (전남개발공사빌딩)	061-288-8737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임수동)	054-478-8028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용호동)	055-269-0520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4층 (이도2동, 경제통상진흥원)	064-797-7525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8층 (영등포동2가)	02-6924-8735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4층	02-2086-8026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5층 (두류동, 성안빌딩)	053-650-6819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1층 (신곡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031-828-1926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3층 (상동, 대신프라자)	032-680-6525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2층 (고잔동)	031-481-7537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 2층 (금곡동, 소곡회관)	031-785-3327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3층 (교동, 정관빌딩)	033-820-2576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1층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해오름학사)	043-849-1033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063-460-3644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선원동)	061-689-4955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대도동)	054-271-2024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4층	055-371-7567
고양파주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오피스동 8층 805호	031-540-3819

Q & A





Thank You